

대법원 2013. 3. 26. 선고 2010다71316 판결  
[손해배상기] [공2013상 735]

【판시사항】

2009. 5. 8. 법률 제9648호로 전부 개정된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하에서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에 의하여 발생한 화재로부터 연소한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민법 제758조 제1항**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판결 요지】

2009. 5. 8. 법률 제9648호로 전부 개정된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이하 '개정 실화책임법'이라고 한다)은 구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2009. 5. 8. 법률 제964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과 달리 손해배상액의 경감에 관한 특례 규정을 두었을 뿐 손해배상의무의 성립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공작물의 점유자 또는 소유자가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생긴 화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지는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일반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에 의하여 직접 발생한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뿐만 아니라 그 화재로부터 연소한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도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758조 제1항**이 적용되고, 실화가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한 그 화재로부터 연소한 부분에 대한 손해 배상의무자는 **개정 실화책임법 제9조**에 의하여 손해배상액의 경감을 받을 수 있다.

【참조조문】

구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2009. 5. 8. 법률 제964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제1조, 제2조, 제3조, 민법 제758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2012. 6. 26. 선고 2010다48905 판결**(공2012하 1285)

【주 문】

원심판결의 원고 2, 4, 5 패소 부분 중 영업손실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 2, 4, 5의 나머지 상고 및 원고 금양화학 주식회사, 원고 3의 상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원고 금양화학 주식회사, 원고 3과 피고 사이에 생긴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1. 원고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민법 제758조** 내지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제3조** 소정의 손해배상액 경감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형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사실상의 전경사실에 속한다(**대법원 1996. 5. 10. 선고 95다40454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이 이 사건 화재의 구체적인 발생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점, 피고 공장은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받았고, 점검 당시 별다른 특이사항이 발견되지 않은 점, 원고들이 취급하는 물질 역시 가연성 및 인화성이 높아 그 손해가 더욱 확대되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화재의 원인과 규모, 피해의 대상과 정도, 연소 및 피해 확대의 원인, 피해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피고의 노력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가 부담할 손해배상책임을 원고들이 입은 손해의 50%로 경감하였다.

앞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손해배상책임 경감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판단은 정당하다고 수긍할 수 있는 범위 내로서 형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손해배상책임을 경감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2. 원고 2, 4, 5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있어, 재산적 손해의 발생사실이 인정되고 그의 최대한도인 수액은 드러났으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입증하는 것이 사안의 정황상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법원은 증거조사의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밝혀진 당사자들 사이의 관계, 불법행위와 그로 인한 재산적 손해가 발생하게 된 경위, 손해의 성격, 손해가 발생한 이후의 재발 방지 등의 관련된 모든 간접사실들을 종합하여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의 범위인 수액을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다6951, 6988 판결**, **대법원 2005. 11. 24. 선고 2004다48509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화재로 위 원고들이 입은 구체적인 영업손실액을 산정하는 것이 중분히 가능하다고 보이는 이상, 원심으로서서는 먼저 위 원고들에게 손해액을 입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만약 위 원고들이 입증할 수 없거나 입증에 부족한 경우에는 위 원고들에게 입증을 촉구하는 등으로 구체적인 손해액에 관하여 심리하여야 하며 그 후에도 구체적인 손해액을 알 수 없을 경우 관련된 모든 간접사실들을 종합하여 손해액을 산정할 수 있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 원고들이 구체적 영업손실액을 입증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구체적인 영업손실액에 대하여 위 원고들에게 입증을 촉구하거나 심리하지도 않은 채 위 원고들의 영업손실액에 대한 주장을 받아들일 수는 없다고 판단하면서도 위 원고들이 이 사건 화재로 상당 기간 영업을 하지 못하여 수익을 얻지 못하는 손해를 입은 사실 자체가 인정되는 이상 이러한 영업손실액을 위 원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액 경감 시에는 유리한 사유로 참작하기로 하여, 위 원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이들이 입은 전체 손해액의 50%로 경감한 금액에다 원심이 임의로 정한 일정한 금액을 합한 액수로 정한 것은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구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2009. 5. 8. 법률 제964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실화책임법'이라고 한다)은 "**민법 제758조**의 규정은 실화의 경우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2009. 5. 8. 법률 제9648호로 전부 개정된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이하 '개정 실화책임법'이라고 한다)**은 **제1조**에서 "이 법은 실화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실화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그 손해배상액의 경감에 관한 **민법 제758조**의 특례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2조**에서 "이 법은 실화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한 경우 연소한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한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개정 실화책임법은 구 실화책임법과 달리 손해배상액의 경감에 관한 특례 규정을 두었을 뿐 손해배상의무의 성립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공작물의 점유자 또는 소유자가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생긴 화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지 여부는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일반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에 의하여 직접 발생한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뿐만 아니라 그 화재로부터 연소한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도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 및 그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758조 제1항**이 적용되고, 실화가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한 그 화재로부터 연소한 부분에 대한 손해 배상의무자는 **개정 실화책임법 제9조**에 의하여 손해배상액의 경감을 받을 수 있다.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2007. 6. 31. 이후 발생한 이 사건 화재에 관하여는 개정 실화책임법에 따라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로 직접 발생한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뿐만 아니라 그 화재로부터 연소한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도 **민법 제758조 제1항**을 적용할 수 있고, 다만 연소한 부분에 대하여는 그 손해배상액을 경감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민법 제758조 제1항, 개정 실화책임법 제1조, 제2조** 등의 해석·적용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나. 상고이유 제2, 3점에 대하여

**민법 제758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라 함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서는 당해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 의무를 다하였는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3다24489 판결** 등 참조), 또한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한 사고라 함은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만이 손해발생의 원인이 되는 경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며, 다른 제3자의 행위 또는 피해자의 행위와 결합하여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가 공동원인의 하나가 되는 이상 그 손해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101343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채용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 공장은 공장건물의 외벽 등을 내화구조로 하거나 공장 내부에 스프링클러와 같은 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하는 등 화재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되어 있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연성 물질인 우레탄폼으로 채워져 있어 화재 발생 시 연소가 급격히 확대될 가능성이 높은 샌드위치 패널을 설치하고, 스프링클러 등의 시설도 설치하지 아니한 설치·보존상의 하자가 있었고, 그러한 하자로 인하여 원고 금양화학 주식회사에 605,110,235원, 원고 2에게 266,865,604원, 원고 3에게 657,677,959원, 원고 4에게 723,912,070원, 원고 5에게 301,238,400원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공작물책임에 관한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반, 손해배상책임을 범위에 관한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원고 2, 4, 5 패소 부분 중 영업손실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되, 위 원고들의 나머지 상고 및 원고 금양화학 주식회사, 원고 3의 상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고 금양화학 주식회사, 원고 3과 피고 사이에 생긴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시사항】**

2009. 5. 8. 법률 제9648호로 전부 개정된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하에서 공작물의 설치·보존상 하자에 의하여 발생한 화재로부터 연소한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도 [민법 제758조 제1항](#)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2009. 5. 8. 법률 제9648호로 전부 개정된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이하 '개정 실화책임법'이라 한다)은 구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2009. 5. 8. 법률 제964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과 달리 손해배상액의 경감에 관한 특례 규정만을 두었을 뿐 손해배상의 무의 성립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공작물의 점유자 또는 소유자가 공작물의 설치·보존상 하자로 인하여 생긴 화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지는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일반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공작물의 설치·보존상 하자에 의하여 직접 발생한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뿐만 아니라 그 화재로부터 연소한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도 공작물의 설치·보존상 하자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758조 제1항](#)이 적용되고, 실화가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한 화재로부터 연소한 부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의무자는 [개정 실화책임법 제3조](#)에 의하여 손해배상액의 경감을 받을 수 있다.

**【참조조문】**

구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2009. 5. 8. 법률 제964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제1조, 제2조, 제3조, 민법 제758조 제1항](#)

**【전문】**

【원고, 상고인】 엘아이저손해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주 담당변호사 윤재식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연 담당변호사 이종영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0. 6. 30. 선고 2009나10900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가. 구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2009. 5. 8. 법률 제96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실화책임법'이라고 한다)은 "[민법 제750조](#)의 규정은 실화의 경우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2009. 5. 8. 법률 제9648호로 전부 개정된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이하 '개정 실화책임법'이라고 한다\)](#)은 [제1조](#)에서 "이 법은 실화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실화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그 손해배상액의 경감에 관한 [민법 제755조](#)의 특례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2조](#)에서 "이 법은 실화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한 경우 연소로 인한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한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개정 실화책임법은 구 실화책임법과 달리 손해배상액의 경감에 관한 특례 규정만을 두었을 뿐 손해배상의 무의 성립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공작물의 점유자 또는 소유자가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생긴 화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지 여부는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일반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에 의하여 직접 발생한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뿐만 아니라 그 화재로부터 연소한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도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와 그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758조 제1항](#)이 적용되고, 실화가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한 그 화재로부터 연소한 부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의무자는 [개정 실화책임법 제3조](#)에 의하여 손해배상액의 경감을 받을 수 있다.

나. 원심은 개정 실화책임법하에서도 구 실화책임법하에서와 마찬가지로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에 의하여 직접 발생한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민법 제758조 제1항](#)이 적용되고 그 화재로부터 연소한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민법 제750조](#)가 적용된다고 전제한 다음,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주식회사 아우레이트(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의 손해는 피고 건물에서 발생한 화재에서 직접 기인한 것이 아니라 그 화재가 연소확대되어 인접한 소외 회사의 건물로 불길이 옮겨붙은 바람에 발생한 것이어서 [민법 제758조 제1항](#)이 적용될 수 없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소외 회사에 대하여 [민법 제758조 제1항](#)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이유로 배척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설사한 바와 같이 피고 건물에서 발생한 화재가 연소확대되어 인접한 소외 회사의 건물로 불길이 옮겨붙은 바람에 소외 회사가 손해를 입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만약 피고 건물에 설치·보존상의 하자가 있었고 그 설치·보존상의 하자와 소외 회사가 입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한다면, 피고는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라 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도 피고 건물에 설치·보존상의 하자가 있는지 여부, 그 설치·보존상의 하자와 소외 회사가 입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 등을 심리·판단하여, 피고가 소외 회사에 대하여 [민법 제758조 제1항](#)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지 여부를 가렸어야 할 것이다.

이와 달리 한 원심의 조처에는 [민법 제758조 제1항, 개정 실화책임법 제1조, 제2조](#)의 해석·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이유 있다.

2.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 문]

[원고, 항소인] 금양화학 주식회사 외 4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금호화학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인 외 2인)

[제1심판결] [서울지방법원 안산지원 2009. 5. 21. 선고 2008가합6837 판결](#)

[변론종결]

2010. 5. 14.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금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2, 3, 4, 5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2에게 144,000,000원, 원고 3에게 328,838,979원, 원고 4에게 100,530,711원, 원고 5에게 154,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07. 9. 10.부터 2010. 7. 1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더 같은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 금양화학 주식회사의 항소 및 원고 2, 3, 4, 5의 각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원고 금양화학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원고 금양화학 주식회사가 부담하고, 원고 2, 3, 5와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비용 중 3/5은 원고 2, 3, 5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며, 원고 4와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 비용 중 4/5은 원고 4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원지급부분은 기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금양화학 주식회사에게 403,110,235원, 원고 2에게 315,535,804원, 원고 3에게 657,677,959원, 원고 4에게 572,442,781원, 원고 5에게 321,623,94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07. 9. 1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더 같은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자위

① 원고 금양화학 주식회사(이하 '원고 금양화학'이라 한다)는 시흥시 (이하 주소 1 생략)에서 원고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 2는 시흥시 (이하 주소 2 생략)에서 'OOOO'이라는 상호로 수용성 코팅제를 제조·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이며, 원고 3은 시흥시 (이하 주소 2 생략)에서 '△△△△상사'라는 상호로 수지를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이고, 원고 4는 시흥시 (이하 주소 2 생략)에서 '□□산업'이라는 상호로 합성수지 및 천연도료를 제조·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이며(원고 3, 4는 원고 2 소유의 워 소재지 공판건을 동일 부를 임차하여 공장 및 창고로 사용하고 있다), 원고 5는 시흥시 (이하 주소 3 생략) 공장의 일부를 임차하여 '○○○○'이라는 상호로 산업용 재료를 제조·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② 피고는 원고들의 건물 및 공장과 인접한 시흥시 (이하 주소 4 생략)에서 합성고무(폴리우레탄폼 등) 제조업을 하는 회사이다.

나. 이 사건 화재의 발생

① 2007. 9. 10. 22:40경 시흥시 (이하 주소 4 생략)에 있는 피고 공장 '가'동의 발포 및 숙성실(가연성이 강한 스펀지를 화학적으로 합성하여 쉘 형태로 만들어 경화시키기 위하여 보관하는 장소이다)에서 화재가 발생하였고, 불길이 피고 공장 뒤쪽에 위치한 워 (이하 주소 3 생략) 및 (이하 주소 2 생략)(OOOO, △△△△상사, □□산업, ◇◇○○○○)로 옮겨진 후 (이하 주소 1 생략)의 금양화학의 공장까지 번져, 원고들의 공장건물, 사무실 및 기숙사 건물, 워 건물에 수용중인 동산 등이 소회되는 피해가 발생하였다(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  
② 워 화재 발생 당시 피고 공장에서 근무하던 피고의 경비실 직원 소외인은 같은 날 21:50경까지 피고 공장을 순찰하면서 화재장 후 등 특이점을 발견하지 못하였는데, 같은 날 22:40경 7번 회로(숙성실 직경면)에서 지구등이 점등되고 동시에 화재 경보가 울려 발포 및 숙성실 근처로 가보니 검은 연기와 함께 불꽃이 솟구치면서 공장 전체로 불길이 번지는 것을 보고, 같은 날 22:47경 119에 화재신고를 하였다.

다. 이 사건 화재의 원인

이 사건 화재를 조사한 시흥경찰서의 화재현장 감시결과 및 시흥소방서의 화재현장 조사서에 의하면, 피고 공장은 샌드위치 패널 구조로 되어 있고 정면 우측에 숙성실이, 좌측에 발포실이 위치하고 있는데, 워 소외인의 진술 및 숙성실은 전소·붕괴되었지만 발포실은 일부만이 남아있는 점 등에 비추어 숙성실에서 최초로 발화되어 발포실로 화재가 확산된 것으로 추정되고, 피고 공장이 전소되어 화재의 원인(전기적·기계적인 원인 또는 방화 및 실험로 화재)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밝힐 수 없어, 이 사건 화재원인을 '미상'으로 결론짓는다.

[인정근거] 다음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3, 갑 제10호증의 1 내지 7, 갑 제11, 13, 14호증, 갑 제18호증의 1 내지 14, 갑 제20호증의 1 내지 27, 갑 제21호증의 1 내지 47, 갑 제22호증의 1 내지 5, 갑 제24호증의 1 내지 21, 갑 제25호증의 1 내지 8,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당사자들의 주장

① 원고들의 주장

피고 공장의 발포실 및 숙성실에서 취급하는 스펀지는 가연성 및 인화성이 강하므로 피고로서는 공장에 내화구조를 갖추고 스프링클러 등 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하여야 함에도 그러한 사실을 설치하지 않는 등 피고 공장이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하여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민법 제758조 제1항](#)에 의하여 원고들에게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또한, 피고는 워와 같이 피고 공장에 내화구조를 갖추지 않고 발포실 및 숙성실에 화재 감지장치 및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지 않았으며, 노후화된 전선 및 차단기를 교체하지 않고 자동고장 구분기폐기 등을 수리하지도 않았으며, 공장 건물 옆에 무어가로 천막건물을 설치하여 연소를 확대시키는 등의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민법 제750조](#)에 의하여 원고들에게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② 피고의 주장

이 사건 화재는 피고 공장의 직접 화재발생 후 연소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민법 제758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에게 원고들 주장과 같은 과실이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민법 제750조](#)에 의한 손해배상책임 역시 부담하지 않는다.

나. 판단

① 이 사건 화재에 [민법 제758조 제1항](#)이 적용되는지 여부

[원법재판소는 2007. 8. 30. 2004나225호로](#) 구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이하 '실화책임법'이라 한다)에 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면서 임법지가 개선입법을 하기 전까지 위 법률의 적용을 중지하는 결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실화책임법이 2009. 5. 8. 법률 제9646호로 전면 개정되어 시행되었는데, 그 부칙 제2조에서는 2007. 8. 31. 이후 위 법률 시행 전에 발생한 실화로 인한 연소에 대하여도 위 개정 법률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어, 2007. 9. 10. 발생한 이 사건 화재는 위 개정 실화책임법이 적용된다.

구 실화책임법은 [헌법 제750조](#)의 규정은 실화의 경우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제1조](#))고 규정하여, 연소 부분에 관하여는 실화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도록 하였는 바([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1다9239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공작물 자체의 설치·보존상의 하자에 의하여 직접 발생한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민법 제758조 제1항](#)이 적용되고, 그 화재로부터 연소한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는 실화책임법이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되었다([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다56404 판결](#) 등 참조).

그러나, 개정 실화책임법은 '이 법은 실화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실화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그 손해배상액의 경감에 관한 [민법 제765조](#)의 특례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고 규정하여, 중대한 과실이 없는 연소의 경우에도 민법의 일반규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었으나, 그에 따라 공작물 자체의 설치·보존상의 하자에 의하여 직접 발생한 화재가 아닌 그 화재로부터 연소한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는 [민법 제750조](#)만을 적용하여야 할지 아니면 그 연소 부분에 대하여도 무과실책임인 [민법 제758조 제1항](#)이 적용될 수 있을지 여부가 문제된다(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워와 같이 구 실화책임법이 [민법 제750조](#)의 특칙임을 명시하고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살피건대, ① 구 실화책임법 하에서 워와 같이 공작물 자체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로 직접 발생한 화재에 관하여는 [민법 제758조 제1항](#)이 적용되고 그 화재로부터 연소한 부분에 대하여는 실화책임법이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한 이유는, 구 실화책임법이 연소 부분에 대하여는 배상청구권자가 실화자의 중대한 과실까지도 입증하도록 하였음에도 연소 부분에 대하여 공작물책임을 인정하면 실화자가 중대한 과실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도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불균형이 발생하였기 때문으로 보이나, 현행 실화책임법은 구 실화책임법과 달리 [민법 제750조](#)의 적용을 배제하는 형식을 취하지 않고 [민법 제765조](#)의 특칙으로서 중과실이 없는 경우에 손해배상액을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연소 부분에 공작물책임을 관한 규정을 적용하더라도 구 실화책임법 하에서와 같은 불균형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점, ② 손해배상액의 경감에 관한 [민법 제765조](#)는 공작물책임을 관한 [민법 제758조 제1항](#)에도 적용되므로, [민법 제758조](#)의 특칙인 개정 실화책임법을 공작물책임을 적용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해석할 수 있는 점, ③ 현행 실화책임법 하에서는 민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손해에 관하여는 그 배상책임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고, 그 손해 발생 부분이 연소 부분이라고 하여 워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하여야 할 특별한 이유는 없다고 보아는 점 등을 종합하면, 개정 실화책임법에 따라 2007. 8. 31. 이후 발생한 화재에 관하여는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로 직접 발생한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뿐만 아니라 그 화재로부터 연소한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도 [민법 제758조 제1항](#)을 적용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다만 연소 부분에 대하여는 개정 실화책임법에 따라 그 손해배상액을 감경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㉔ 피고의 손해배상책임

민법 제758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라 함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의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작물의 설치·보존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 의무를 다하였는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1. 14. 선고 99다3954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화재의 발생원인이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 공장의 속성상 또는 발포실에 어떠한 설치·보존상의 하자가 있어 발화가 되었음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증거들 및 갑 제16호증의 기재에 비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공장에서 생산되는 스펀지는 가연성 및 인화성이 아주 높아 어떠한 원인에 의하든 스펀지에 착화될 경우 화재가 주변으로 급격하게 확산될 개연성이 높은 사실, 피고 공장과 인접 공작과의 거리는 8m 정도로 매우 근접할 뿐만 아니라, 인접 공장 역시 합성수지, 그라비야 잉크, 페비닐 등 화재로 인하여 빠르게 연소되기 쉬운 물건을 취급하는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접 사실에다가 화재가 발생한 직후 119신고를 하더라도 소방대원이 화재현장에 도착하기까지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화재와 같이 빠르게 연소가 될 경우(22:47경 화재가 발생한 후 30분이 지나지 않아 피고 공장의 상당부분이 소멸되고 □산원 건물도 화재경보가 울린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상당히 빠른 속도로 연소가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에는 진화작업을 하더라도 그 손해의 확대를 막기 어려운 점을 보여 보면, 피고 공장 내부에 단순히 화재 감지시설이 설치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장건물의 외벽 등을 내화구조로 하거나 벽체 및 천장 등에 내화시설을 추가하고 공장 내부에 스프링클러와 같은 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하는 등 화재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되어 있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앞서 인정한 증거들에 비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공장은 가연성 물질인 우레탄폼으로 채워져 있어 화재 발생시 연소가 급격히 확대될 가능성이 높은 샌드위치 패널 구조로 되어 있고(피고 주장과 같이 발포실 외벽에 내화자재인 그라스울 샌드위치 패널을 사용하였다는 점만으로는 충분한 내화구조를 갖추었다고 볼 수 없으며, 공장 전체 외벽이 내화구조를 갖추었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스프링클러 등의 시설도 설치되어 있지 않아 결국 피고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가 원고들의 공장 및 건물에까지 연소된 사실이 인정되는데, 따라서 피고 공장에는 위와 같은 설치·보존상의 하자가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공장 신축 당시 건축 및 소방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공장을 건축하고 소방기구 및 설비를 갖추었음 뿐만 아니라, 당시의 법령상 스프링클러의 의무설치대상에 해당되지도 않았으므로 피고 공장에 설치·보존상의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가 그 주장과 같이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공장을 건축하고 소방설비 등을 갖추었더라도 그것이 하자 유무를 판단하는데 있어 피고에게 유리한 근거자료가 많은 것으로 하고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곧바로 피고 공장에 설치·보존상의 하자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피고가 관계법령을 준수하였는지 여부와는 별개로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피고 공장에 그 설치·보존상의 하자가 존재함은 전항에서 이미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손해배상액의 결정

계정 심판책임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실화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손해배상액의 감경을 청구할 수 있고(한), 그 경우 법원은 제3조 제2항 각 호의 사정을 고려하여 손해배상을 감경할 수 있는데, 위 법률에서 말하는 '중대한 과실'이란 통상인에게 요구되는 정도의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않더라도 약간의 주의를 한다면 손쉽게 위법·유해한 결과를 예견할 수 있는 경우임에도 인연히 이를 간과함과 같은 거의 고의에 가까운 현저한 주의를 결여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라 할 것인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 피고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는 이러한 의미의 중대한 과실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 사건 화재의 구체적인 발생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점, 피고 공장은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받았고, 점검 당시 별다른 특이사항이 발견되지 않은 점, 원고들이 취급하는 물질 역시 가연성 및 인화성이 높아 그 손해가 더욱 확대되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화재의 원인과 규모, 피해의 대상과 정도, 연소 및 피해 확대의 원인, 피해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피고의 노력 등 이 사건 가혹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가 부담할 손해배상책임을 원고들이 입은 손해의 50%로 감경함을 원칙으로 하되, 앞서 본 바와 같이 일부 원고들의 영업손실 등 주장과 관련하여 그 청정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추가로 고려하여 각 원고들별로 손해배상액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다. 원고들별 인정 손해액

- ㉑ 원고 금양화학 : 301,555,117원
- ㉒ 원고 2 : 144,000,000원
- ㉓ 원고 3 : 328,838,979원
- ㉔ 원고 4 : 385,000,000원
- ㉕ 원고 5 : 154,000,000원

라. 공제(원고 금양화학, 원고 4)

㉑ 원고 금양화학

위 인정 손해액 301,555,117원에서 원고 금양화학이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금 345,819,659원(을 제1호증)을 공제하면, 피고와 원고 금양화학에게 지급할 손해배상금은 더 이상 남아있지 않게 된다.

㉒ 원고 4

위 인정 손해액 385,000,000원에서 원고 4가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수령하였음을 자인하는 보험금 284,469,289원을 공제하면, 원고 4의 나머지 손해액은 100,530,711원이 된다.

마.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 2에게 144,000,000원, 원고 3에게 328,838,979원, 원고 4에게 100,530,711원, 원고 5에게 154,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화재발생일인 2007. 9. 10.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전부 및 범위 외 권하여 항정항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시 판결 선고일인 2010. 7. 16.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 금양화학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원고 2, 3, 4, 5의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 2, 3, 4, 5의 항소를 각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당사에서 인용한 각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2, 3, 4, 5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위 각 금액의 지급을 명하며, 제1심 판결 중 나머지 부분은 정당한므로, 원고 금양화학의 항소와 원고 2, 3, 4, 5의 각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한병수(재판장) 최홍호 이승원

주11 이 사건 화재의 발생원인이 미상이고 피고에게 과실이 없어 원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는 피고의 주장에는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경우 그 감경을 구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 2009. 5. 8. [법률 제9648호, 시행 2009. 5. 8.] 법무부

### 제1조(목적)

이 법은 실화(실화)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실화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그 손해배상액의 경감(경감)에 관한 민법 제765조의 특례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이 법은 실화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한 경우 연소(연소)로 인한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한하여 적용한다.

### 제3조(손해배상액의 경감)

① 실화가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 그로 인한 손해의 배상의무자(이하 "배상의무자"라 한다)는 법원에 손해배상액의 경감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법원은 제1항의 청구가 있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 손해배상액을 경감할 수 있다.

1. 화재의 원인과 규모
2. 피해의 대상과 정도
3. 연소(연소) 및 피해 확대의 원인
4. 피해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실화자의 노력
5. 배상의무자 및 피해자의 경제상태
6. 그 밖에 손해배상액을 결정할 때 고려할 사정

### 부칙 <제9648호, 2009.5.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법은 2007년 8월 31일 이후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실화에 대하여도 적용한다.